제 4 장 [이용대상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]

제07조 (이용 대상자 및 순위) 장기요양등급을 득한 수급자 및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는 아래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인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/목욕 급여는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
②저소득 어르신
③독거어르신
④일반 어르신

제08조 (이용자모집방법) 대상 노인 모집은 다음과 같다.

①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 실시후 모집 하거나 주변인의 소개로 모집한다.
②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.
③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관련 기관에 비치하거나 배포한다.
④포털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, 상담 게시판, 또는
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 후 모집한다.

제 5 장 [이용계약에 관한 사항]

제09조 (계약목적) 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을 두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

제10조 (계약 방법)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,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 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.

제11조 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할 수 있다.

①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②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.
③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.

제12조 (이용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) 서비스 이용/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,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.

①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②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.
③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.

제13조 (월이용료)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월이용료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.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재가급여 월한도액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

구 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						
방문요양	30분	1시간	1시간 30분	2시간	2시간 30분	3시간	3시간 30분	4시간	5시간 ~ 8시간
	16,940	24,580	33,120	42,160	49,160	55,350	61,670	68,030	연장 검토

구 분	수 가 (단위 : 원 / 회당)		
방문목욕	목욕차량 이용 (차량내 목욕)	목욕차량 이용 (가정내 목욕)	목욕차량 미이용시
	86,480	77,970	48,690

-2021년 장기요양고시 급여기준-

②비용부담

- 일 반 이 용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%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.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%~6%

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- 그 밖에 비 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.

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㉠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비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.

- 대상자의 등급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,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, 감소
-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 증, 감소

이 경우 대상자와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3일 이내에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.

- 재가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, 감소

㉡변경방법 및 절차

- 변경사유가 발생 할 시 기관은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내용 및 비용을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수립한다.
- 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급자(보호자)의 승인을 득한다.

⑤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5일까지 입금한다.

⑥대상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.

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(보호자)에게 영수증(기관자체서식)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.

제14조 (계약의 해제)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①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
②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
③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
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/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

제15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
①신원인수인의 의무
-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-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.
-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.
-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.

②신원인수인의 권리
-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-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제 6 장 서비스내용 및 유의사항

제16조 (서비스내용)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①방문요양 :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(식사하기, 화장실이용하기, 옷 갈아입기, 머리감기 등) 및 가사활동,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.

구분	서비스 내용
신체활동지원	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 청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증진, 배설 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 등
인지활동지원	인지자극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
가사활동지원	취사,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 등
개인활동지원	외출시 동행, 일상 업무 대행 등, 행동변화, 응급상황대처 등
정서지원	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도움 등
기타	행동변화, 응급상황 대처 등,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.

②방문목욕 :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.

제17조 (서비스 유의사항)
①방문요양
- 1회 4시간 까지 서비스함. 필요시 하루에 2회 방문까지 서비스 되며,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.
- 심야(22시~06시) 또는 공휴일(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함)의 경우 30% 가산된다.

- 대상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, 1일 90분미만 월 20회로 인정된다.
  단,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요양사가 배우자이면서 65세 이상일 경우 1일 90분 이상 월30~31회로 인정된다.

②방문목욕

-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된다.
-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된다. 단, 방문목욕 차량이라함은 욕조, 급탕탱크, 펌프, 호스릴 등의 구성품을 설치한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자가 인증을 받은 차량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이다.
-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,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다.

제 7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

제18조 (배상책임) 배상책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①센터는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(서비스)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.

②배상책임보험은 장기요양기관을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한다.

③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

-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(상해보험 청구)을 청구할 수 있다.